

**공직기관의 위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보도인 경우 「취재원 비닉」 인정**

-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

미국의 건강식품회사 과세처분 보도에 관한 소송의 촉탁증인신문에서, 월간지 「테미스」의 편집장 등이 취재원에 관한 증언을 거부한데 대해 도쿄지법 민사 39부는 지난 5월 22일, 올 4월에 시행된 ‘공익통보자보호법’을 인용해 취재원의 증언 거부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익통보자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국가나 공직기관의 위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보도인 경우 취재원의 비닉이 인정된다”고 판단, 공무원의 수비(守秘) 의무를 취재원 비닉이나 알 권리보다 우선시킨 논리(3월 14일 도쿄지법 결정)를 뒤집었다.

이에 앞서 도쿄지방법원 민사 39부는 지난 4월 24일 교도(共同) 통신 기자가 취재원에 관한 증언을 거부한데 대해 “증언거절은 직접적으로 취재원 자체를 따지는 질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며 간접적으로 취재원의 특정(特定)에 이어지는 질문에도 인정된다”고 증언거부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는 한편 41건의 질문 중 취재원의 인원수 등을 질문한 10건에 대해서는 증언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해 10월 11일의 니이가다(新潟)지방법원 결정과 금년 3월 17일의 도쿄고등법원 결정은 NHK 기자의 증언거부를 인정한 바 있으나,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14일 요미우리신문 기자의 증언거부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신문협회보』, 2006년 5월 2일자, 5월 30일자)□

**「살해」라는 자막 보도는 명예훼손**

-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

지난 4월 28일,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부친에 대한 상해치사혐의로 송청되어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일본 요코야마시의 남성이 니혼(日本) 텔레비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 남성은 니혼 텔레비전이 보도를 통해 「자식이 부친을 살해」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자신이 부친의 살해범인 것처럼 보도해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니혼(日本)텔레비전에 3,85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에 재판부는 이를 일부 인정, 방송사에 165만 엔의 지불을 명했다.

이 남성은 2004년 7월 4일 자택에서 부친과 언쟁 끝에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었는데, 부친이 몸싸움 직후 사망하자 이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다음 날인 2004년 7월 5일의 부검 결과 사인은 질병으로 판명되었으며, 남성은 2004년 7월 6일 상해치사혐의로 송청되었다. 그 후 혐의는 폭행으로 바뀌면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건에 대한 방송은 2004년 7월 5일에 있었다.

재판부는 “텔레비전의 보도 프로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의 여부는 방송내용 전체에서 받는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2003년의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해, 방송 프로가 앞부분에서 ‘살해’ 등의 자막을 흘렸다는 점을 지적하고 아나운서의 낭독된

고에는 '상해치사혐의'라고 전했다는 방송사의 항변에 대해서는 "앞부분의 보도에 의해 형성된 일반 시청자들의 인상을 불식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사의 인터넷 기사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보』, 2006년 5월 23일자) □

**사설의 표현이 논평의 영역을 일탈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

일본 도쿄도 내(內) 한 구립중학교의 전(前) 사회과 교사가 「문제교사」, 「반일적(反日的)인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고 평한 산케이(産經)신문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도쿄지방법원 민사 42부는 지난 5월29일, "적시 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며 논평부분도 의견논평의 영역을 일탈(逸脫)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산케이신문은 2002년 1월 30일자 「주장」란에서 「문제교사, 조속히 교단에서 해직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 동 교사가 "수업 내용에 의문을 갖는 학부모를 음해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해당 학생이 어쩔 수 없이 전학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해 동 교사가 교육위원회로부터 연수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반일적인 교육」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일본역사의 어두운 부분을 고의적으로 과장하고 이에 학생들이 동조하게끔 유도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일간신문 사설의 표현으로는 다소 정확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논평의 영역을 일탈했다고까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 측은 6월 9일 항소했다. (『신문협회보』, 2006년 6월 13일자) □

**방송윤리위반 벌금상한액 10배 인상 법안 미 하원 가결 이어 부시 대통령도 서명**

미국 하원은 지난 6월 7일 방송윤리규정을 위반한 텔레비전·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벌금의 상한액을 현재의 10배가 되는 32만 5,000달러로 올리는 방송윤리강제법안을 가결했으며, 이어 15일에는 부시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한편 지난 2004년, 미 내셔널풋볼리그전 슈퍼볼 생방송 중 인기가수 자넷 잭슨의 오른쪽 가슴이 노출된 문제에 대해,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5월 31일 이를 방송한 CBS에 대해 총액 5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자넷 잭슨의 가슴 노출사건이 계기가 되어 보수파를 중심으로 외설방송 억제를 위한 벌금 강화기운이 대두되었고 2005년 1월 동 법안이 제출되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FCC는 외설 프로그램의 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눈에 띄기 쉬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까지는 「품위가 없는」프로그램의 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신문협회보』, 2006년 6월 13일자, 6월 20일자) □

**PCC의 위상 및 역할 지속적으로 강화돼  
언론들은 PCC의 존재를 적극 알려야**

- 영국 PCC 위원장 메이어 경 -

제15회 영국 PCC 연말결산이 열린 자리에서 PCC 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메이어 경은 PCC가 사생활 침해에 관한 불만신청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메이어 경은 PCC가 언론에 대한 불만신청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총 228건의 사생활 침해 불만신청 중 119건이 PCC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이 났고 97건은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메이어 경은 “이러한 결과는 언론보도의 사생활 관련 불만신청 중 소수만이 법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실과 비교되며 8년 전에 통과된 인권 법안이 사생활에 관한 법익을 다루는 데 있어 합법적 권리를 갖게 됨에 따라 PCC의 위상이 격하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PCC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불만신청의 27%는 일반인들이 관련한 것이고 54%는 지역 언론사들에 관한 것. 이 밖에 국가적 규모의 언론사가 개입된 경우는 31.2%였다. 메이어 경은 “이러한 성과와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능력을 종합해보면 PCC는 일반 법원이 제시하기 어려운 뉴스 취재의 선(線)을 정할 수 있고 그 선을 넘을 때 더욱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이어 경은 “‘과파라치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추적을 벌이고 있다’는 매우 걱정

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PCC가 아직은 브리티시 간행물의 사진으로부터 생긴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이어 경은 “PCC가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브리튼』지에 실린 사진 뒤에는 비디오와 다른 증거물 등으로 검증된 매우 심각한 과파라치 폭력에 대한 불만신청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메이어 경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대중들이 그러한 일들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우리의 판결은 신속하고 가혹할 것이다. 개인의 신체적 안전이 사진을 찍기 위한 과파라치의 추격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메이어 경은 최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언론의 법령 규칙에 관여했던 세들리 판사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PCC의 특성 중 하나는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인데 이러한 특성이 법을 통해서나 혹은 법을 토대로 형성된 조직을 통해서 반복되기는 힘들다고 본다”도 말하고 “예를 들어, PCC가 운영된 이후 윤리강령은 30회 이상 수정되어왔다”고 주장했다.

메이어 경은 “2005년 PCC에 접수된 불만신청 건수가 PCC 창설 이래 가장 많은 3,654건을 기록했지만, 이는 언론사의 편집의 질이 떨어지거나 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PCC의 성과로 인해 언론 편집의 질이 더욱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직 국영언론 직원은 “80년대와 90년대의 신문들과 비교하면 오늘날의 신문사들이 더욱 올바르게 처신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80년대는 매우 거칠었고 신문을 읽는 것이 재미있었지만 확실히 신문들로 인한 문제로 시끄러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러한 통계가

신문사의 질이 낮아져서라기보다 PCC의 활동 및 역할이 더욱 명백해진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CC의 연말결산자료를 보면 PCC 윤리강령 제1항인 ‘정확도’에 관한 불만신청이 67.4%로 가장 많았고 사생활 침해가 12.5%로 뒤를 이었다. 이어 슬픔과 충격에 대한 취재(5.2%), 아동취재(3.4%), 답변 거부(2.3%) 등이 뒤를 이었다.

메이어 경은 각 언론의 편집장들에게 눈에 띄는 정정보도를 할 것과 PCC로의 연락방법을 보기 쉽게 게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이어 경은 “지금까지의 자료를 볼 때 PCC의 연락처를 눈에 띄게 게재하는 것 때문에 그 신문에 대한 불만신청이 많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Press Gazette 2006년 6월 2일자) □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해 달라」  
피해 유족 요청에 언론사들 고민**

지난 2005년 11월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발생한 여아살해사건의 피해자 아버지가 2006년 7월 4일의 판결공판을 앞두고 “매스컴이 성적 피해의 묘사를 기피해 잔혹한 범죄의 실태가 사회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성적 피해 사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명으로 보도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각 언론사는 지금까지 성범죄 보도에서 피해자의 인권이나 유족들의 감정을 배려하여 구체적인 표현을 피해왔으나, 이러한 요청을 받고는 일부 언론사가 피해내용까지 파고든 기사를 게재하는 등 언론사마다 성폭행 보도의 원칙과 피해자 부모의

요청 사이에서 성폭행에 관한 표현의 기술이 제각각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요미우리(讀賣), 니혼게이자이(日經), 산케이(産經), 교도통신(共同) 등은 실명으로 보도하면서도 유족들의 감정을 배려해 기사의 첫머리, 기소, 첫 공판 등의 보도에만 한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사히(朝日)와 마이니치(毎日) 신문은 직접적인 기술까지 했다. 아사히신문 측은 “유족의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번 기사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선택은 어려웠으며, 독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여아의 부친이 예시한 검찰 측의 묘사를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독자들로부터는 유족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알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피해 유족의 요청을 존중하여 최대한 사실을 쓰고 싶었으나 성범죄에서는 모든 것을 쓸 수는 없다. 다른 유족의 생각도 있다. 모든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요미우리, 산케이신문 등은 직접적인 표현을 피했다. 요미우리 신문 측은 성범죄의 범행 방법이나 상황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랐으며 “기사에도 언급되었지만 유족이나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산케이신문 측은 “피해 유족의 요청은 이해하지만 그 사건의 성관련 묘사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싶어하지 않는 독자도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니혼게이자이 신문 측은 이번에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으며 ‘성범죄 피해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신문협회보』, 2006년 7월 4일자) □